



일본의 성인·고령자 연령 개정 추진

이상우 수석연구원

최근 일본은 민법상 성인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조정하고 공적연금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종전의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표함. 민법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신규 연령층의 유입에 따라 금융상품시장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초고령사회 국가인 일본은 성인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공적연금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¹⁾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기준연령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일본 자민당은 2018년 2월 14일 성인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 민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정부 각료회의를 거쳐 3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임²⁾
 - 또한 일본 정부는 2018년 2월 16일 각료회의에서 공적연금의 원칙적인 수급개시 연령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향후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권고하는 ‘고령사회대책대강’을 확정함³⁾
- 일본의 성인 기준연령 개정은 2015년에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8세 이상으로 개정한 선거법⁴⁾과 주요 국가의 성인 기준연령에 영향을 받음
 - 세계 187개국 중에서 141개국이 18세(16, 17세 포함) 이상을 성인연령으로 하고 있으며, 134개국은 사법상 성인연령과 선거연령이 일치함⁵⁾

1) 일본 내각부는 2016년 12월에 고령자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제안한 바 있음

2) 일본경제신문(2018. 2. 15)

3) 일본경제신문(2018. 2. 16)

4) 공직선거법 부칙 11조는 민법 및 소년법 등에서 성인연령의 재검토 필요성을 명시

5) 内田亜也子, 民法の成年年齢引き下げの意義と課題(2017. 12)

〈표 1〉 주요국의 성인 기준연령 비교

구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캐나다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선거연령	18	18	18	18	18	18	18	18	19	18
사법상 성인연령	18	18	18	18	18	18	18	18	19	20

자료: 内田亜也子(2017, 12)

■ 공적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은 고령자 기준연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정책방향과
갈고 궁극적으로는 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사회참여에 대응한 연금제도 구축이 명목적인 배경임

- 고령사회대책대강은 고령자를 일률적으로 정의한 1950년대의 연령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여 신체·지적 기능개선과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각 제도 특성별 고령자 연령기준 개정을 권고함
- 이를 근거로 후생노동성은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여 2020년에 공적연금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임
 - 이와 함께 정년연장이나 계속고용 기업 확대 등의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임

■ 민법 개정에 따라 향후 성인 기준연령과 관련된 타 법률 등(〈표 2〉 참조)의 개정이 추진될 예정임

- 민법상 성인 기준연령의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상속법, 조세특별조치법, 국적법, 여권법, 소비자계약법 등 24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동시에 상정될 예정임

〈표 2〉 일본 성년 연령 주요 법률 개정 방향

법률명	대상자	현행 연령기준	향후 개정 방향	비고
민법	성인	20세 이상	18세 이상	2022년 시행
국민연금법	제1호 피보험자(납부의무자)	20세 이상	현행 유지	자민당(안) 부담 증가
상속법	미성년자 공제	20세 미만	18세 미만	-
조세특별조치법	· 주택취득 등 자금 증여세 비과세(수증자) · ISA 적용연령 · 주니어 ISA 적용연령	20세 이상	18세 이상	-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법	미성년자	20세 이상	미성년을 20세 이상으로 대체	2022년 시행
국적법	이중 국적자의 국적 선택 시	20세 미만	18세 미만	2022년 시행
여권법	여권취득 연령제한	20세 미만	18세 미만	2022년 시행
소비자계약법	민법적용	20세 이상	18세 이상	2022년 시행
소년법	소년	20세 미만	18세 미만 검토	논의 중

자료: 時事通信(2017, 12, 27); 大和総研(2018, 1, 15)

- 새로이 성인이 되는 18·19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본은 소비자계약법 등에서 소비자 피해대책과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부작용 방지 장치를 마련할 계획에 있음
 - 민법 개정은 미성년자들에게 금융상품 가입 시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상법 및 금융상품 관련법에 영향을 주어 향후 18·19세의 부모 동의 없이 보험 및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미성년자흡연금지법 등에서는 현재와 같이 흡연자를 20세 이상으로 유지하고,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자도 현행 20세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였음
 - 한편, 18세~20세⁶⁾ 취업인구에 대한 보험료 면제는 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를 통해 볼 때 일본의 민법 개정에 따른 성인 및 고령자 기준연령의 변화는 보험 및 연금상품, 펀드 상품, ISA 등의 금융상품시장 확대 등 사회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18·19세의 소비시장 유입은 종전에 일부 가입이 금지되었거나 주도적으로 가입할 수 없었던 보험 및 금융상품에 대한 구매 가입성을 높여 보험 및 금융상품시장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고령자 기준 연령 상향은 고령자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임 **kiri**

6) 국민연금법상 18세 이상 학생의 경우 학생납부특례제도가 적용되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음